

(구)졸업연기제도

학사학위

취득유예제도

안내

2020년 7월
교무팀

01

시행배경

02

운영방안

03

추진일정

04

Q&A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시행일:2019. 1. 1.] 제23조의5 제3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교무처-총학생회 학사제도 협의체 운영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관련 논의 진행

- 학사제도 협의체 운영하기로 합의(2019.06.11.)
- 기존 졸업연기 관련 절차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변경될 예정임을 알리고 졸업 유예비 폐지 검토 결과를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2019.08.12.)
-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관련한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학생 의견 수렴함(2019.09.25.)

졸업유예비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

- 졸업유예비 폐지 여부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시행에 대해 지속적인 문의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와 관련하여 타대학에서 사례 조사 요청

8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분류표

졸업요건 충족여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수강 신청	등록금	학적 구분
졸업요건 미충족자	X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X		
		O		O		
				X		
	O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수료)
		X	졸업미통과자		X	
성적미이관자			파견학기당 10만원			
복수 학위파견자		1학기당 10만원				
졸업요건 충족자	O	O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학사학위 취득유예)
				X	졸업유예비 폐지	

8학기 이상 초과학기자 명칭 구분

졸업요건 충족여부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수강 신청	등록금	학적 구분
	X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X		
		O	O		
			X		
졸업요건 미충족자	O	X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수료)
			X	졸업미통과자	
		성적미이관자		파견학기당 10만원	
		복수 학위파견자		1학기당 10만원	
졸업요건 충족자	O	O	O	학점당 등록금	재학생 (학사학위 취득유예)
			X	졸업유예비 폐지	



초과학기생



수료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구)졸업연기제도, (신)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운영방안 비교(2020년 2월부터 시행)

운영방안	졸업연기제도 기존(~2019년 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변경(2020년 2월 졸업~)
신청자격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갖춘 자
신청제한	없음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신청횟수	없음	재학 연한 이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가능
가능기간	재학 연한 이내	재학 연한 이내
수강신청	최초 신청 시, 수강신청자만 가능	매 학기 신청 가능
학적변동	학적 변동 가능(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학적 변동 불가(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등록여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 납부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졸업유예비 폐지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서류발급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 (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
에서 **일정 기간(최대 4회)**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 1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충족한 자
-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당시, 재학연한이 남은 자

재학연한이란?

신입학생 재학연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일반전공 (건축학(5년), 의학전공 제외)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7학기)-조기졸업							초과등록												
	정규등록(6학기)-조기졸업						초과등록													
건축학전공(5년)	정규등록(10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9학기)-조기졸업									초과등록										
	정규등록(8학기)-조기졸업								초과등록											
의학전공	정규등록(12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11학기)-조기졸업											초과등록								
	정규등록(10학기)-조기졸업										초과등록									

재학연한이란?

편입학생 재학연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일반전공 (건축학(5년) , 의학전공 제외)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3학기)-조기졸업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2학기)-조기졸업															
건축학전공(5년)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6학기)						초과등록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5학기)-조기졸업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조기졸업															
의학전공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7학기)-조기졸업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6학기)-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 (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 기간(최대 4회)**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재학연한별 유예 가능 기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시, 이수 재학연한	가능 유예기간
재학연한(16학기) 중, 12학기 이하 재학	4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3학기 재학	3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4학기 재학	2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5학기 재학	1학기 가능
재학연한(16학기) 중, 16학기 이상 재학	유예 불가, 졸업 처리

* 소속 단과대학별로 재학연한 확인 필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 (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 기간(최대 4회)**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신입학생 유예 가능기간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정규등록(8학기)																	➔ 4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1학기)										➔ 4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3학기)										➔ 4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6학기)										➔ 2학기 가능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8학기)										➔ 신청 불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 (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 기간(최대 4회)**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누가 해당이 되나요?

편입학생 유예 가능기간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 4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1학기)				➔ 3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2학기)				➔ 2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3학기)				➔ 1학기 가능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4학기)				➔ 유예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1 학사서비스
 학석/국제
수업/비교과
성적/졸업
장학/등록
인증/교직
학생생활신청
상담지원
학생(학부) v Logout 사이트맵 장애접수

전체 메뉴 즐거찾는 메뉴

학석/국제 >

수업/비교과 >

2 성적/졸업 v

- 성적조회
- 공고성적조회
- 평가항목별점수조회
- 성적인정학점신청
- 학점포기신청
- 학부졸업요건 신청(논문 등)
- 조기졸업신청
- 졸업여기시청
- 3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테스트중)
- 예비졸업사정결과조회
- 예비졸업사정결과조회(공학)
- 편입생교육과정조회
- 편입생교육과정조회(공학인증)
- 재입학생교육과정조회
- 진로설정 성적조회
- 학생경력관리

장학/등록 >

HOME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테스트중) x
x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테스트중) 유의사항

졸업학년도/학기
4
신청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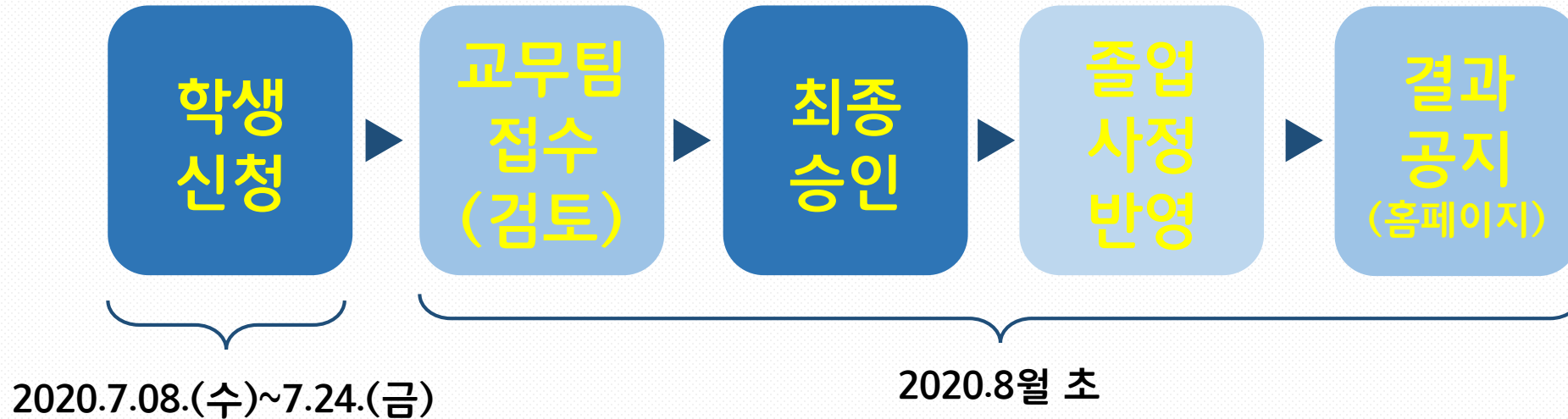
(최초)졸업예정일	2020년 2월 예정	(변경)졸업예정일	2020년 8월 예정
신청일자	2019-12-24	처리상태	신청
미승인사유	비교과 영역(논문, 졸업시험 등) 미충족		
비고	비교과영역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1.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는 학생은 최종 졸업사정처리가 완료되고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승인 됩니다.(※ 비교과 : 어학인증제, 논문, 졸업시험 등)
 2.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서 1회 1학기, 최대 4학기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미신청시 자동 졸업 처리가 되며 4학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자동 졸업 처리가 됩니다)
 3.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과목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의 경우, 졸업유예비 폐지)
 4.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신규 과목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5. 재수강은 불가능합니다.(단, 재수강은 기 취득학점이 F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 취득학점이 F 이상인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졸업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수강 불가)
 6. 수강 신청 후 학기 개강 전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 신청 내역은 개강 전에 최종 삭제되며, 개강 이후의 과목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수강정정은 허용하지 않음)
 (※ 수강정정 기간 이후 수강 신청한 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 등록금 납부 구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학점수별 수업료
 1~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납부
 4~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납부
 7~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납부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납부
 7.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가 중, 휴학, 전과, 복수-부전공 신청 등 학적변동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절차

2020년 8월 졸업 대상자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졸업유예비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강신청 가능

- 신규 수강만 허용(단, 기 이수한 과목 중 “F” 성적을 받은 과목만 재수강(대체지정과목 포함) 가능)
(* 기 이수한 과목을 재수강하여 “F” 학점을 받았을 경우, 졸업사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 재수강 허용 불허)
- 본 수강신청 기간 중 특정 날짜에 신청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란?

졸업요건 (교과, 비교과) 을 모두 충족한 자가 매 학기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학연한 이내에서 **일정 기간(최대 4회)**까지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등록 구분

수강신청 여부	신청학점	납부금액
수강신청 X	0학점	등록금 미부과
수강신청 0	1~3학점 이하	등록금의 1/6
	4~6학점 이하	등록금의 1/3
	7~9학점 이하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졸업유예비 폐지

* 현재 등록 일정 기준, 정규학기 개강 전 1회차(본등록) 기간에만 등록 가능

* 수강정정 및 수강포기 불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복수/부전공 등 신청 불가**
- 유예자가 수강 신청 후, **폐강의 사유로 수강 신청이 어려울 경우 해당 등록금은 환불 처리**
- 도서관 이용(열람실, 도서대출 등)은 재학생과 동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불가(생활비대출 포함)
단, 국가장학금 수강신청자의 경우 한해 수업료 범위 내 장학금 신청가능(수혜횟수 8회 범위 내)
- 외국인 학생의 졸업요건 중 "토픽 4급 이상" 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불가할 경우,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음

왜 신청 해야하나요?

- 졸업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 해야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미신청시**, 해당 학기에 **졸업**
- **4회차** 학사학위취득유예 **종료 시**, 최종 **졸업** 처리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란?

졸업요건 (교과, 비교과) 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운영방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복수/부전공 및 교직이수를 위한 졸업연기제도
신청자격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갖춘 자	
신청제한	조기졸업자, 졸업요건 미충족자	
신청횟수	재학 연한 이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 가능	없음
가능기간	재학 연한 이내	
수강신청	매 학기 신청 가능	
학적변동	학적 변동 불가(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학적 변동 가능(휴학, 복수/부전공 신청)
등록여부	졸업유예비 폐지	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납부
서류발급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학사서비스 1 학적/국제 수업/비교과 성적/졸업 장학/등록 인증/교직 학생생활신청 상담지원

학생(학부) Logout 사이트맵 장에접수

전체 메뉴 | 즐겨찾는 메뉴

- 학적/국제 >
- 수업/비교과 >
- 성적/졸업 >**
 - 성적조회
 - 공고성적조회
 - 평가항목별점수조회
 - 성적인정학점신청
 - 학점포기신청
 - 학부졸업요건 신청(논문 등)
 - 조기졸업신청
 - 졸업연기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테스트중)
 - 예비졸업사정결과조회
 - 예비졸업사정결과조회(공학)
 - 편입생교육과정조회
 - 편입생교육과정조회(공학인증)
 - 재입학생교육과정조회
 - 진로설정 성적조회
 - 학생경력관리
- 장학/등록 >

HOME | 졸업연기신청 **유의사항**

졸업학년도/학기 4 **신청** 취소

(최초)졸업예정일	2020년 2월 예정	(연기)졸업예정일	2020년 8월 예정	
졸업연기신청일자	2019-12-24	처리상태	미신청	졸업연기사유* 3

3 선택

- 선택
- 복수전공
- 부전공
- 교직

※ 1. 졸업연기는 1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복수·부전공 및 교직을 추가적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2020년 2월 졸업을 2020년 8월 졸업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학생은 졸업 불가이므로 졸업연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0-3학점에 대한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19

언제 신청 해야하나요?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후
일정 기한에 신청**

1학기 : 1월 초

2학기 : 7월 초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2020년 8월 졸업→2021년 2월 졸업으로 유예
2020.07.08.(수) ~ 07.24.(금)

Q&A

Q)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추진 배경은?

A)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및 동법 시행령의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개정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규정의 보완이 요구됨

최근 졸업요건을 충족하고도 장기적인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들의 졸업유예비를 폐지하고자 함

Q)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분류는?

A)

졸업요건(교과, 비교과)을 모두 갖춘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최대 4회)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

구분	내용
대 상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학적구분	학사학위취득유예생
가능기간	재학연한에서 등록된 재학 기간을 뺀 기간
수강의무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않음

* 재학연한이란?

- 수업연한이 8학기인 경우, 최대 16학기까지 재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 휴학(일반/군/질병/출산 등)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Q)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의 기본 취지는?

A)

금번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의 목적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의 **졸업유예비를 폐지**하고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의 **학적 관리를 좀 더 엄격히** 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Q) 2020년 7월 현재 재학연한을 이미 초과한 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한가?

A)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예외없이 바로 적용을 하는 부분으로서,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도기적인 시점을 고려해 2020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대 1학기**까지 소급 적용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8학기)							
편입인정학기(4학기)				정규등록(4학기)				초과등록(8학기)							



최대 1학기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 가능

Q) 현재 초과휴학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A)

초과휴학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가능했지만, 향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과 맞물려 초과휴학은 불가함

Q) 현재 휴학중이면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복학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2020학년도 1학기에 휴학중이면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했을 때

2020학년도 1학기		2020학년도 2학기 (2020년 8월 졸업)	2021학년도 1학기 (2021년 2월 졸업)
휴학	졸업신청서 작성	졸업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졸업

Q) 수강신청하고 수업료를 납부했는데 학교의 사정으로 폐강이 된 경우
수업료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학생은 **본수강 신청**에만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수강정정 및 수강포기**
를 할 수 없음.

(수강 신청하고 1차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삭제됨)

수강 신청하고 수업료를 납부했는데 학교의 사정으로 폐강이 된 경우에는 수업료 환불규
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함

Q) 학사학위취득유예 1회차 신청 후, 2회차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1회차 신청 후, 2회차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자동으로 졸업 처리가 됨

예시 : 2020학년도 1학기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이 최초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한 경우

회차	유예기간	신청기간
1회차	20년 8월 졸업 → 21년 2월 졸업	2020.07.08.(수)~2020.07.24.(금)
2회차	21년 2월 졸업 → 21년 8월 졸업	2020.12.30.(수)~2021.01.12.(화)(예정)
3회차	21년 8월 졸업 → 22년 2월 졸업	2021.7월 초(미정)
4회차	22년 2월 졸업 → 22년 8월 졸업	2022.1월 초(미정)

※ 해당 신청기간 미신청시에는 해당 학기에 자동졸업 처리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최대 4회차를 모두 소진하는 유예자의 경우에는 2022년 8월에 자동졸업 처리됨

Q)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를 하고 졸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함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 작성 → 학과 제출 → 교무팀 승인 → 해당 학기 졸업 처리
※ 해당 학기 졸업식 이전까지만 취소 가능함

감사합니다